

웅지세무대학교	교 무 위 원 회 규 정	문서번호	H-03-01-0
		제정일자	05.03.01
		최근개정일자	22.06.23
		페이지	4
		주 관 처	교학처
		관리부서	제1처
		홈페이지공개	공 개

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

제1(목적) 이 규정은 학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무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03.01.>

제2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기획처장, 교학처장, 대외협력처장,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총장이 필요에 의해 위촉하는 자로 당연직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14.04.01., 2015.03.24., 2015.06.30., 2016.08.22., 2018.04.11., 2019.01.14., 2022.06.23>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<신설 2010.03.01.>

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신설 2010.03.01.>

④ 삭제 <2015.06.30.>

제3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0.03.01.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<신설 2010.03.01.>

③ 위원장 유고시 부총장이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0.03.01., 2015.03.24., 2022.06.23>

제4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 <개정 2018.04.11.>

제5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03.01.>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. <신설 2010.03.01>

제6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0.03.01.>

1. 학칙개정
2. 입학, 졸업, 성적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06.30.>
3. 삭제 <2007.11.28.>
4. 삭제 <2007.11.28.>
5. 규정개정 <신설 2015.06.30., 2016.08.22.>
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15.06.30.>

- 제7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<개정 2010.03.01.>
② 간사는 교학처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15.03.24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시행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3월 24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6.08.22.>

이 규정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8.04.11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9.01.14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2.06.23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